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8. 20 선고 2024가단109371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16.

판 결 선 고 2024. 8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표시 1,2,3,4,5,6,7,8,9,10,11,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㎡를 명도하고, 2024. 6. 20.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1,2,3,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, 원고는 2023. 2. 20. 피고에게 별지 건물 중 별지 도면

1층 표시 1,2,3,4,5,6,7,8,9,10,11,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㎡를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, 피고가 2023. 8. 20.까지만 차임을 납부하고 더 이상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임대차 해지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이규

별지